제413회 정례회
’23. 11. 29.(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안치영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7일

3. 제안이유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와 외국인 지원 사무의 담당부서가 이원화됨에 따라, 현행「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타 시·도_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별도조례 제정: 9개 시·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 단체 등 지원 및 사무의 위탁 사항 규정 (안 제17조, 제18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또한 행정 측면에서는,「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23. 7. 1.)에 따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담당하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사무 중에서 외국인 지원 사무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 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조 문	규 정 사 항	구분	조 문	규 정 사 항
총칙 규정	제1조	목적	실체 규정	제10조	간사
	제2조	정의		제11조	운영세칙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12조	지원 사업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3조	다문화가족에 이해증진
	제5조	실태조사		제14조	가족해체 예방
실체 규정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16조	포상
	제8조	위원의 임기	보칙 규정	제17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8조	사무의 위탁
			부칙	시행일, 일반적 경과조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규정한 정의를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4조는 법 제3조의3[2]에 따라 매년 충북도의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규정한 것임.

○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법령에는 도 차원의 자문 · 심의 기구 구성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도 계획, 정책 등의 협의 및 자문을 위한 민 · 관 협의 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협의회 설치 · 운영 조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 지원사업과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5조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했고,

- 안 제17조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비용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18조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시행계획수립, 실태조사, 협의회 설치, 지원사업, 유관 단체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에 부합하며 내용상 타당함.

○ 또한 각 조항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위에서 규정되었고, 집행부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쳐 법적 ·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

참고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관련 현황**

□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9	계	5,601	2,198	711	414	145	182	206	212	563	163	709	98
	남	765	325	112	44	6	21	15	30	96	8	103	5
	여	4,836	1873	599	370	139	161	191	182	467	155	606	93
'20	계	5,670	2,288	727	410	144	186	204	239	553	154	671	94
	남	785	340	112	46	11	21	15	32	101	12	89	6
	여	4,885	1948	615	364	133	165	189	207	452	142	582	88
'21	계	5,672	2,302	736	388	146	172	191	222	597	151	669	98
	남	806	349	107	49	9	22	15	29	107	13	97	9
	여	4,866	1,953	629	339	137	150	176	193	490	138	572	89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

□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9년	9,823	3,629	1,244	871	395	547	418	325	884	308	994	208
'20년	10,268	3,824	1,288	908	418	551	421	337	962	296	1,057	206
'21년	10,903	4,064	1,387	949	427	577	441	355	1,029	324	1,132	218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

□ 다문화가족 이혼건수

(단위 : 건)

연도	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9년	335	139	37	32	9	12	8	7	33	10	38	10
'20년	288	109	41	19	12	18	14	10	24	4	33	4
'21년	296	118	45	20	8	15	9	14	28	9	27	3

※ 자료출처 : 2021년 인구동향조사, 통계청